

동작구의회공고 제2020-5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회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현재 이용 중인 동작사랑상품권의 법적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동작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및 사업을 명시하여 유통질서 확립,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품권의 발행, 할인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 나.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규정(안 제7조)
- 다. 가맹점의 등록, 관리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제10조)
- 라. 상품권 관련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 마. 상품권 오류 및 위·변조를 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회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제8조에 따라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제8조에 따라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업무

나. 상품권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업무

다. 그 밖에 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4. “가맹점”이란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
가맹점”이라 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종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협의·조정하여 권면금액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

1. 1만원권
2. 5만원권
3. 10만원권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명칭
2. 권면금액
3. 유효기간
4. 발행일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상품권 할인 및 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50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판매대행점 또는 운영대행사와의 협약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른 할인 및 수수료 지급에 따른 손실금액은 구에서 보전한다.

제7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경품제공,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에게 할인판매, 추가 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판매대행점: 상품권의 보관·판매·충전·환전 등
2. 운영대행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①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써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가맹점의 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가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3.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가맹점으로써의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등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령한 상품권
 -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령한 상품권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판매대행점 또는 개별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위법행위에 이용하거나 위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업 및 지원)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의 선정·관리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상품권의 오류 및 위·변조) ①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는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면금액 및 기재사항 등 오류를 점검·확인한 후 정정하여 처리·유통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는 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오류 및 위·변조 상품권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보안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의 판매대금)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구로 귀속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관리) ①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는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맞게 필요한 범위에서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는 제8조에 따른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가맹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9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운영대행사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영 제7조 별표와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운영된 상품권은 이 조례에 따라 발행·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가맹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맹점을 등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동작사랑상품권”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작사랑상품권”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역상품권”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작사랑상품권”으로 한다.